

1. 개정이유

해양 오염물질 방제·방지에 사용하는 자재·약제에 대한 형식승인 등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을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형식승인 관련 업무 처리기관의 일원화를 추진하고, 국가권익위원회의 공공부과금 연체금 부담 경감방안과 관련된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정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방제분담금 징수유예 근거 신설(안 제54조)

- 천재지변 등 방제분담금의 징수유예가 불가피한 상황 발생시 등 분담금의 징수유예를 통해서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

* '공공부과금 연체금 부담 경감방안'(국민권익위, '22) 관련 제도개선 권고과제

나. 형식승인 등 관련 권한을 위임하는 근거 신설(안 제94조)

- 성능시험, 형식승인, 검정 등 관련 절차의 처리기관 일원화를 위해 오염물질 방제를 위한 형식승인 권한을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위임

* 해양 오염물질의 방제·방지에 사용하는 자재·약제를 제작·제조하려는 자는 성능 시험(해양경찰연구센터), 형식승인(해양경찰청), 검정(해양경찰연구센터)을 받아야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재부 협의 완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제2항”을 “제2항 및 제3항”으로, “조정하거나 환급”을 “조정 또는 환급하거나 징수를 유예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전단 중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제4항”을 “제5항”으로 한다.

③ 공단은 방제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방제분담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제분담금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재해로 인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
2.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손실로 분담금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
3.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납부의무자에게 분담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

제94조제7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

제1호,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110조제4항 본문에 따른 오염물질의 방제·방지에 사용하는
자재·약제에 대한 형식승인
2. 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시험·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
작·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오염물질의 방제·방지에 사용하는 자재
·약제에 대한 형식승인 면제 확인
5. 법 제110조제7항에 따른 선박에 비치·보관한 자재·약제의 인정
6. 법 제110조제9항에 따른 자재·약제에 대한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
업무정지
7. 법 제110조제10항에 따른 자재·약제에 대한 성능시험 취소
8. 법 제110조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외 자
재·약제에 대한 성능인증, 성능시험, 검정 및 인증 취소
9. 법 제110조3제2항에 따른 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의 접수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방제분담금의 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) 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
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거나 납부하는 방제분담금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4조(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54조(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공단은 방제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방제분담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제분담금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. 1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재해로 인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2. 납부의무자가 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손실로 분담금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3.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납부의무자에게 분담금을 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④ ----- 제2항 및 제3항----- ----- 조정, 환급 또는 징수를 유예----- -----
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방제분담금을 조정하거나 환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, 납부기한, 납부장소, 환급 시기나 그 밖에 필요	

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방제분
담금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
야 한다.

④ 방제분담금의 납부통지(제3
항에 따른 통지를 포함한다)를
받은 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
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방제
분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
다. 이 경우 조정신청은 방제분
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
지 아니한다.

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조정신
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그
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
알려야 하며, 이미 납부한 금액
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
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
거나 환급하여야 한다.

⑥·⑦ (생략)

제94조(권한의 위임) ① 삭제
② ~ ⑥ (생략)
⑦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23조
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
한을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
위임한다.

-.

⑤ ----- 제4항

--. -----

-----.

⑥ ----- 제5항

-----.

⑦·⑧ (현행 제6항 및 제7항과
같음)

제94조(권한의 위임)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-----

-----.

<신 설>

<신 설>

1. · 2.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1. 법 제110조제4항 본문에 따
른 오염물질의 방제 · 방지에
사용하는 자재 · 약제에 대한
형식승인

2. 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 따
른 시험 · 연구 또는 개발을
목적으로 제작 · 제조하거나
수입하는 오염물질의 방제 ·
방지에 사용하는 자재 · 약제
에 대한 형식승인 면제 확인

3. · 4. (현행 제1호 및 제2호와
같음)

5. 법 제110조제7항에 따른 선
박에 비치 · 보관한 자재 · 약
제의 인정

6. 법 제110조제9항에 따른 자
재 · 약제에 대한 형식승인의
취소 또는 업무정지

7. 법 제110조제10항에 따른 자
재 · 약제에 대한 성능시험 취
소

8. 법 제110조2제1항부터 제4항
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
대상외 자재 · 약제에 대한 성
능인증, 성능시험, 검정 및 인
증 취소

<신 설>

9. 법 제110조3제2항에 따른 사
업자 지위 승계 신고의 접수